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 포함〉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2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 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범행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가. ----- ----- ----- ----- ----- ----- -----

현행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생략) 4. 5.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 ----- ----- ----- ----- ----- ----- ----- ----- ----- ----- ----- ----- 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법은 몰수·추징·환수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부패범죄’¹⁾를 별표에 규정하고, 몰수대상을 범죄행위의 보수를 포함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확대하였으며,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이전된 경우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²⁾.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이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재산을 효과적인 환수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법임.

특히, 부패재산 중 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³⁾으

1)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 별표는 참고자료1 참조)

2)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3)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직접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형법」 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므로 재산범죄 피해자 소유인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⁶⁾. 범죄수익등은 원칙적으로 박탈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지한 것임⁷⁾.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4)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하 생략)

- 6) 홍찬기,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2015, p.164

-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이 일부 부패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몰수·추징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부 해외에 있는 은행이나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⁸⁾.

○ 부패범죄로서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인 현행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정사기범죄’는 「형법」 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상습범 포함) 중⁹⁾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¹⁰⁾로 한정됨.

- 이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¹¹⁾에 따

7)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2, p.163

8) 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감법학 제23호」, 2012, p.93, 홍찬기,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2015, p.165

9)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 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¹²⁾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사기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나 보이스피싱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포계좌의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범죄행위의 범죄자가 제3자가 보유한 대포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그 제3자가 대포계좌를 양도하여 보유한 수익은 대포계좌 양도 등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¹³⁾를 위반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접근매체의 일종인 예금통장¹⁴⁾을 사기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폭넓게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포계좌 관련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을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1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14) 이용자가 예금통장(뒷면의 Magnetic Stripe)을 이용하여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을 한 경우 예금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전자적 정보로 보아 접근매체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적 정치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및 그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임(김병태,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4권」, 법무부, 2011, p.129).

- 어떤 범죄행위를 ‘특정사기범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환수 등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사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이 법 및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¹⁵⁾의 취지,¹⁶⁾ 범죄행위의 반사회성 정도,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 등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빼돌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몰수·추징의 특례가 인정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자금추적 등 강제수사 수단을 활용한 몰수보전¹⁷⁾으로

15) 협약은 다양한 부패형태를 범죄화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및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체도를 구축하며, 부패수익 자산을 몰수하여 본국에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6) 협약에서는 어떤 범죄를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당사국이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에 대처할 것과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참고자료2 협약 제23조 참조)

17)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자인 대포계좌 대여·양도자의 범죄수익 관련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추후 확정판결을 통한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또한, 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포계좌 관련 범죄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기범죄에 추가되는 범죄의 근거 법률 및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이 부패범죄 중에서도 제한된 범죄행위만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로 삼는 것은 민사·형사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의 영역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법 체계와의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인바,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특정사기범죄에 추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작용보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더 큰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는 실물 대포계좌가 아니라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데,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은닉될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¹⁸⁾ 범죄의 사각지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범죄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는 그 입법취지, 현대의 법 상황, 효과적인 입법목적 달성, 피해회복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

18) 신이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유통 등의 규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73집」, 2023, p.159

[참고자료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 나.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2. 「형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에 따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나.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 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6. 「국민투표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
7.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3조까지 및 제235조의 죄
8.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10.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
1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 및 제94조의 죄
12. 「상법」 제630조, 제631조 및 제634조의2의 죄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의 죄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 및 제95조의2의 죄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20.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죄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의 죄
22.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의 죄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24. 「보험업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죄
26.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제99조제2항제3호의 죄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28. 삭제 <2016.12.20>
2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죄

[참고자료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3조

제23조(범죄의 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1)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1) 해당 재산을 수령하는 때에 그것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공모·음모·미수·방조·교사·조장·조언하는 행위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각 당사국은 적어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실행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서 실행한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때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 및 그러한 법률의 추후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마.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전제범죄를 실행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00100&bid=23&tag=&act=view&list_no=11212&nPage=)